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448호 2018. 5. 9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46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에 따른 행정예고.....6
- 정선군 공고 제2018- 510호 보상계획 공고.....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467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에 따른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18년 4월 26일

정 선 군 수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범위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지정사유	비고
		유 형	등급	면적(m ²)		
운치지구	신동읍 운치리 274번지 일원	붕괴위험	D	1,757 (L=80m)	낙석 및 붕락 등 붕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

2.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

가. 행정예고 기간 : 2018. 4. 26. ~ 2018. 5. 15. (20일간)
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4. 26. ~ 2018. 5. 15. (20일간)

다. 공고방법 : 정선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관련근거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예고대상)

3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선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기한 : 2018년 5월 15일까지

- 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33-560-2591)
 라. 제 출 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군 안전건설과)
 마. 문 의 처 : 정선군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☎ 033) 560-2479
 바. 처리방향 :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“의견 없음” 으로 간주.

4. 정비계획

지역명	사업기간	사업비 (백만원)	사 업 내 용	비고
운치지구	2018. 7 ~ 2018. 12	500	· 사면정비 1식 ▷ 계단식옹벽 L=45m, 영구앵커 등	

5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

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 및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초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.

의 견 제 출 서

지 구 명

의 견

제출인

주소

성명

(서명)

연락처

운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

< 운치지구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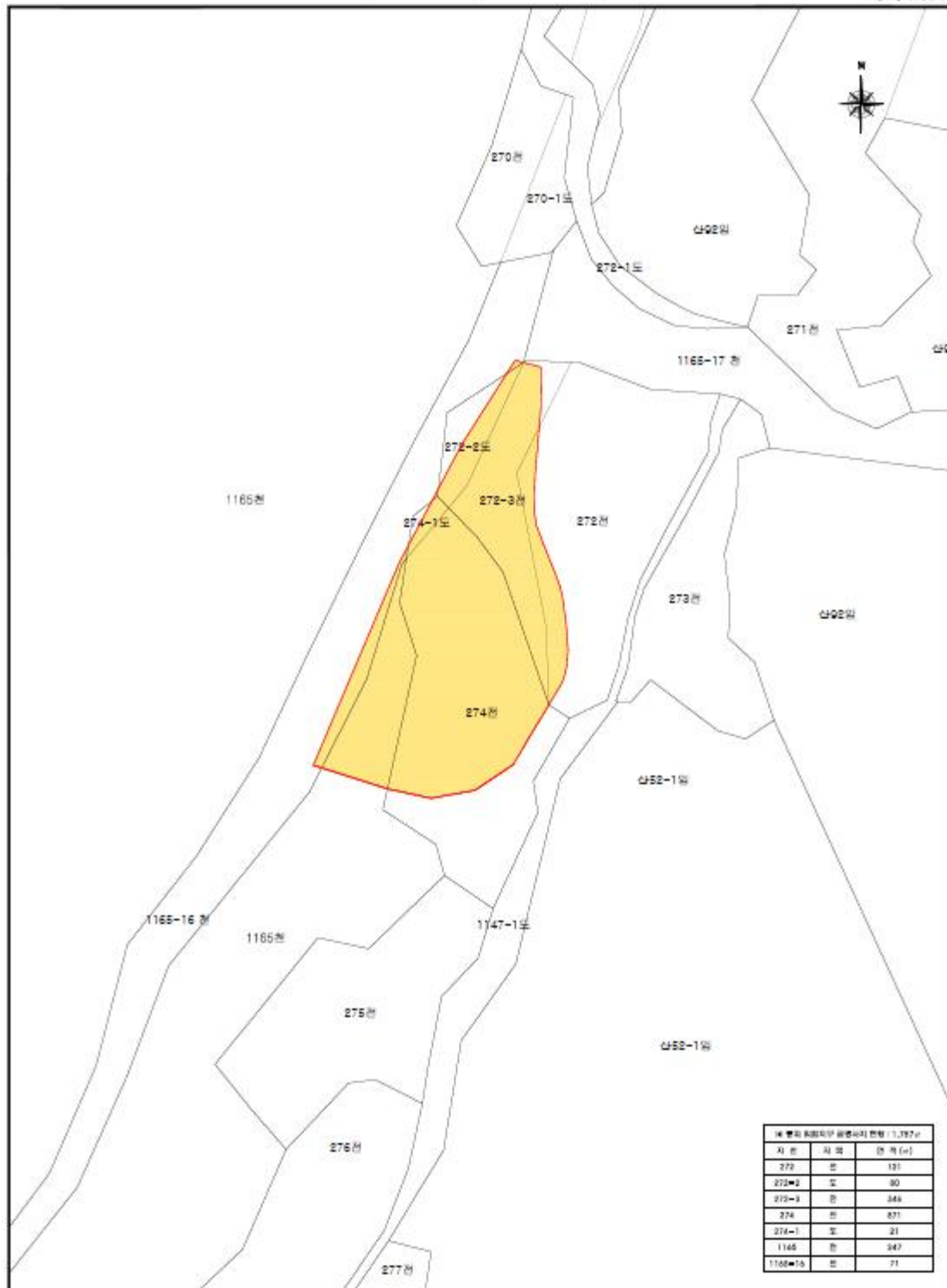
< 운치지구 >



운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전경

용 지 도 (운치지구)

축척 1:300



정선군 공고 제2018- 510호

보 상 계 획 공 고

정선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『민동산 주차장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5월 8일

정 선 군 수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 명칭 : 민동산 주차장 조성사업
-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: 정선군수(문화관광과)
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위치 및 규모 :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03번지 일원 /A=3,415㎡
- 사업기간 : 2018. 6. ~ 2019. 12.

2. 보상대상 토지

- 토 지 :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03번지 외 7필지/A=3,415㎡
- 지장물 : 위 토지내 지장물 일체

3. 열람 및 이의제기

- 열람기간 : 2018. 5. 8(화) ~ 2018. 6. 1.(금)
 - 이의제기 :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등 내용(면적·규격·구조등 상이, 물건누락)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「정선군 문화관광과」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※ 편입면적은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4. 열람장소

- 정선군 문화관광과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033-560-2145

5. 보상시기 : 2018년 하반기(추후 별도 통보)

-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.

※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■ 보상액 산정

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(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
- 보상금 지급 :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.

■ 감정평가업자 추천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(양식) ▶

토 지 소재지	지번	편입면적 (㎡)	토지 소유자			서명 또는 날인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전화)	감정평가업자
			주소	생년월일	성 명			

※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

7. 기타 사항

-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인가고시(사업인정고시) 및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「정선군 문화관광과」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전화 : 033-560-2145, 팩스 : 033-560-2593]

토 지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남면 무릉리	803	대	401	401	윤미희외 1인	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7길				
2	"	803-2	대	43	43	"	"				
3	"	798-1	전	363	363	윤장숙외 1인	남면 무릉리 803				
4	"	804	전	549	549	윤천식	남면 무릉리 804				
5	"	420	잡	284	284	공유상	남면 무릉1로 36				
6	"	421-5	잡	1,503	1,503	공석울	남면 무릉1로 36				
7	"	477-20	잡	82	82	"	"				
8	"	477-19	대	190	190	"	"				